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71

발의연월일: 2022. 8. 4.

발 의 자:위성곤·김정호·윤재갑

주철현 · 김한규 · 이원택

송재호・이동주・이개호

김승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쌀목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 당시 정부는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농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즉, 당시 개정된 이 법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 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게 하였음.

그러나 쌀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하였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함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였고 이에 따라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아 농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미곡의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필요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였다가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 시 시장에 공급하는 수급조절용으로 사용하면 될 것임.

이에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 물량, 매입·판매가격 및 매입·판매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3 신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곡의 매입 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제16조제5항 중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를 "매입·판매의 절차"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

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양곡수급관리정책 관계 공무원
- 2.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양곡수급관리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수있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미곡의 매입 가격은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 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 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 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 상되는 경우
-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기의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 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u>매입·판매 물량의 산정,</u> <u>매입·판매의 시기·절차</u>, 매입 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 매에 필요한 <u>사항과 생산자단</u> 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 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⑦ (생 략) <신 설>

⑤
<u>매입·판매의 절차</u>
<u>사항은</u>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 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서기 및 매입·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 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

<u>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u> 한다.

- 1. 양곡수급관리 관계 공무원
- 2.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 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 3. 그 밖에 양곡수급관리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